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5호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2020. 12. 8. 일부개정) 개정 및 근거 법령 추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관리책임부서 변경에 따른 조항 현행화 및 위원회 대상자 명확화
- 귀농귀촌 활성화 및 귀농귀촌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제2조)2호 및 3호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추가
 - 근거 법령 추가로 대상자 법적 근거 명확화

- (제3조) 3항 ‘경제항만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으로 변경
 - 관리책임부서 변경에 따른 귀농·귀촌 위원회 대상자 명확화
- (제9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1조)지정 취소 신설
 - 귀농·귀촌 전담기구 지정 및 설치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6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농촌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4065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귀농활력계)
- 전자우편: qhfka427@korea.kr
- 팩스 : 063-454-521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전화 063-454-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를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3조제1호가목”을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귀농자”란”을 ““귀농자”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를 “군산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귀촌자”란”을 ““귀촌자”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를 “군산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향만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제향만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구입 자금”을 “임차 자금 및 주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군산시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
5. 귀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6. 읍·면과 작목별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지원 사업
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지정 취소)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제12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농업·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4조----- ----- ----- -----.</p>
<p>제2조(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농업” 이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p>	<p>1.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u>제3조제1호</u>----- -.</p>
<p>2. “귀농자”란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p>	<p>2. “<u>귀농자</u>”란 「<u>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 <u>군산시</u>----- -----.</p>
<p>3. “<u>귀촌자</u>”란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u>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u></p>	<p>3. “<u>귀촌자</u>”란 「<u>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 <u>군산시</u> ----- -----.</p>
<p>4. ~ 7. (생략)</p>	<p>4. ~ 7. (현행과 같음)</p>
<p>8. “<u>농업에 종사하는 자</u>”란 법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을 말한다.</p>	<p>8. “<u>농업인</u>”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항만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항만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2. (생략)

④·⑤ (생략)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2. (생략)

3. 농지 구입 자금 지원

4. 주거 지원

5. (생략)

제4장 보칙

<신설>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농
업기술센터소장-----
-----.

③ -----
-----.

1.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의 지원) -----

-----.

1.·2. (현행과 같음)

3. --- 임차 자금 및 주거 -----

<삭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장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군산시 귀농·귀촌지

<신 설>

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 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
5. 귀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6. 읍·면과 작목별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지원 사업
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

<신 설>

<신 설>

제9조 ~ 제11조 (생 략)

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지정 취소)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
를 방해한 경우

제5장 보칙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
조까지와 같음)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성공적 도시민 유치 지원 및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군산시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산술적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연락처	(063) 454 - 521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6호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귀농·귀촌자 지원 관련 세부사항 추가로 대상자 선정 근거 구체화
- 향후 사업 지침 및 예산 변동성 등을 고려한 일부 규칙 변경으로 사업의 효율성 도모
- 조례 개정(안) 반영에 따른 일부 규칙 변경

2. 주요내용

- (제3조) ‘귀농·귀촌자의 지원 자격’ 1호 및 2호 변경, 3호 추가
 - 자격 관련 세부사항 추가 및 지원 자격 명시

- (제4조)2호 가. 지원대상 :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 나. 지원금액 : 세대당 20,000천원 까지 용자를 ‘농업창업자금 지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시행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로 변경
 - 사업지침 개정 및 예산 변동성 고려하여 시행규칙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6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농촌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4065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귀농활력계)
- 전자우편: qhfka427@korea.kr
- 팩스 : 063-454-521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전화 063-454-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6조,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귀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의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실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지구입자금”을 “농지임차자금 및 주거”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가. 지원대상 : 타시군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나. 지원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조”를 각각 “제13조”로 한다.

제7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귀농·귀촌자의 지원 자격) 조례 제 6조 및 제8조 귀농·귀촌자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귀농·귀촌자 세대구성은 2명 이상 이어야 한다. 2. 귀농·귀촌자 지원 신청은 귀농·귀촌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p><신 설></p> <p>제4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6조 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원대상 : <u>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u> 나. 지원금액 : <u>세대당 20,000천원 까지 용자</u> 3. 농지구입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원대상 : <u>논, 밭, 과수원에 한 한다</u> 나. 지원금액 : <u>세대당 60,000천원 까지 용자 (실거래 가격의 90% 이내)</u> 	<p>제3조(귀농·귀촌자의 지원 자격) --- 제6조, 제7조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u> 2. <u>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귀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u> 3. <u>그 밖에 귀농·귀촌인 지원 자격의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실태를 고려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u> <p>제4조(사업의 지원)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농업 창업 자금 지원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u> 3. <u>농지임차자금 및 주거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원대상 : <u>타시군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5년이내 귀농·귀촌인</u> 나. <u>지원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u>

4. 주거지원

가. 지원대상 : 농촌주택에 한하며
주택 신축, 주택구입, 주택수리
중 세대별 1분야 만 지원

나. 지원금액 : 신축 40,000천원, 주
택구입 30,000천원, 주택수리 10,
000천원까지 용자

5.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용자금은 세대당 100,000천원을 초
과 할 수 없다.

⑥ 용자금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
별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용자에 대한
사항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
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조례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할 지
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지원받은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결정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
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6조(지원금의 회수) ① ----- 제1
3조 -----

-----.

② -----
제13조 -----

-----.

제7조(준용)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성공적 도시민 유치 지원 및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사업의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산술적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연락처	(063) 454 - 521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7호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군 산 시 장



1. 규칙명 :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2020년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
- 자치법규를 인용한 조례 개정 및 조직도 변경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단어 등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 없는 조례 삭제 및 수정(안 제1조)
 - (삭제) 군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 (수정)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
- 수리용 공구 확보관련 조항 삭제(안 제3조제1항)
- 물품출납원 담당자 명칭변경(안 제6조1항)

○ 불용품의 폐기 관련 조례변경(안 제7조제1·2항)

- 불분명한 조례 명칭과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입법예고기간 : 2021. 4. 15. ~ 2021. 5. 6.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농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54065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농기계지원계)

- 전 화 : 063)454-5902, FAX : 063)454-52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 (☎ 063-454-5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시행규칙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을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지도기획담당지도사”를 “업무담당지도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례제6조제2항”을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을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u>----- ----- -----.</p>
<p>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① <u>고장 농기계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4의 부표 2에</u> 준하여 확보한다.</p> <p>② (생 략)</p>	<p>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p> <p>1. (생 략)</p> <p>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u>지도기 획담당지도사</u></p> <p>② (생 략)</p>	<p>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업무담당 지도사</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불용품 폐기) ① <u>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u></p> <p>② 불용 결정은 <u>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장이 불용 처분한다.</u></p> <p>③ (생 략)</p>	<p>제7조(불용품 폐기) ① <u>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u>----- ----- -----.</p> <p>② ----- <u>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의</u>----- -----.</p> <p>③ (현행과 같음)</p>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시행규칙안 시행 시 1억 미만의 비용발생이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연락처	(063) 454-5210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8호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군 산 시 장



1. 조례명 :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기계화 촉진을 위해 임대기준 확대 및 임대료 감면 기준의 변경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임대료 감면 대상자의 감면증빙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로 대체, 담당자의 전산망을 통한 확인 처리로 임차 농업인의 불편 해소
-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에 따른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 조건 문구 정비
- 임대 제한 시 위반항목, 정도, 횟수 등에 따른 세부적인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구체화, 명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3.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기준을 확대(안 제8조제1항)
 - 관내 농업인이 인접시군 소재의 농지경작을 위한 경우 허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시행조례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하며**”를 “**하며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인접시군 소재 농지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허용한다**”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전액면제**”를 “**전액 및 일부면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임차인 중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36조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진다**”를 “**질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 경고
 2. 2회 위반 : 6개월 제한
 3. 3회 이상 위반 : 12개월 제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임대기준 및 사업운영) ① 임대신청은 군산시 거주 농업인과 타지역 거주농업인이 경작지를 군산시에 두고있어야 하며, 임대사업의 형평성을 위하여 기종별 1농가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이 지역특화사업육성,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농업기계임대 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종별로 임대사용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p> <p>②·③ (생 략)</p>	<p>제8조(임대기준 및 사업운영) ① ----- ----- ----- 하며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인접시군 소재 농지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임대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u>전액면제</u> : 재해·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전액 및 일부면제</u> ----- -----</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임차인 중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36조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p>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② (생략)

③ 임대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제15조(임대차계약의 제한) (생략)

<신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질 수 있다.

제15조(임대차계약의 제한)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회 위반 : 경고
- 2. 2회 위반 : 6개월 제한
- 3. 3회 이상 위반 : 12개월 제한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 시 1억 미만의 비용발생이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연락처	(063) 454-5210

군산시 고시 제2021-46호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4월 14일



1. 사업명칭(변경없음) : 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
2. 사업목적(변경없음) : 농촌중심지의 경쟁력을 살려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농촌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정주 여건 향상 및 소재지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도모
3. 사업내용(변경없음)
 -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무궁화문화복지센터, 구구팔팔센터, 공공서비스 거점정비
 - 나. 지역경관개선 : 무궁화 테마거리, 서수 공적터
 - 다. 지역역량강화 :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경영지원 등
4. 사업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일원
5. 사업비(변경없음) : 5,814백만원 (군특 4,070 지방비 1,744)
6.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8년 ~ 2021년

7. 사업효과(변경없음) : 면 소재지 중심기능 및 복지기능 강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 조성으로 주민 교류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 가로경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농촌발전 거점 육성

8. 사업시행자(위탁) : 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9.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금회 변경)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당 초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합 계					4,371	3,430		
1	서수	서수	771-1	임	2,545	1,842	국(기획재정부)	
2	서수	서수	771-4	임	1,560	1,322	국(기획재정부)	
3	서수	서수	746-3	전	266	266	국(기획재정부)	

- 변 경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면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합 계					6,869	6,865		
1	서수	서수	769-1	대	3,504	3,500	군산시	
2	서수	서수	771-1	임	1,788	1,788	군산시	
3	서수	서수	770-3	대	3	3	국(기획재정부)	-
4	서수	서수	771-4	임	1,308	1,308	군산시	
5	서수	서수	746-3	전	266	266	군산시	

10.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금회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 “별 첨”

11. 기타 문의사항

※ 기본계획 변경 열람장소 : 군산시 농업축산과(☎ 063-454-5892)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063-440-5716)

[별첨]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0	공공청사	면사무소	서수면 서수리 769-1번지 일원	-	증)6,599	6,599	금 회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0	공공청사 (면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청사 신설 - A = 6,5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따른 면사무소 복합센터 건축을 위하여 도시 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1-49호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변경)

군산시 고시 제2020-164호(2020.12.11.)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4월 9일

1. 목 적 :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2. 우선공급 대상(변경)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적용지역 : 군산시 전역
4. 적용기간 : 고시일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5. 문 의 처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063-454-3711~3)

군산시 고시 제2021-5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 04. 08.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1. 시 행 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2. 주 소 : 군산시 소룡동 설림길 11
3. 공사내용 : 새만금 공사용 제작장 조성
4. 공사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2호방조제 전면해역
5. 공사면적 : 15,618㎡
6. 공사기간 : 2021.04.08. ~ 2021.12.31

군산시 고시 제2021-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13.

군 산 시 장



- 1. 사 업 명 : 군산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주)은성종합개발
 - 나. 대 표 자 : 유명성
 - 다. 주 소 : 전북 익산시 동서로63길 4, 606호(어양동, 하모니시티)
-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0년 11월 16일
-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1년 4월 12일
- 5. 사업내용(변경승인 내용 반영)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산66 외 64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42,050.8㎡
 - 라. 건축면적 : 11,914.3880㎡(건폐율 : 28.33%)
 - 마. 연 면 적 : 141,449.4844㎡ (용적율 : 215.63%)

마. 건축규모 : 지하 3층~지상 29층 / 아파트 10개동 외, 665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665				
84A	민영주택	255	84.9413	24.5789	109.5202	
84B	민영주택	118	84.8829	25.3706	110.2535	
118	민영주택	157	118.9057	33.4252	152.3309	
146	민영주택	120	146.9166	39.4219	186.3385	
119	민영주택	11	119.9461	33.9490	153.8951	
181	민영주택	2	181.4265	52.7878	234.2143	
238	민영주택	2	238.7563	65.7639	304.5202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294,312,436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4년 1월 30일

6.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1-52호

상평리·이곡리 농촌다움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상평리·이곡리 농촌다움복원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목적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창의적 사업 추진

2. 사업명 : 상평리·이곡리 농촌다움복원사업

3. 사업위치 :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이곡리 일원

4. 사업비 : 2,000백만원(시비 100%)

5.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

6. 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돈헌관 조성

나. 지역경관개선 : 옥구읍성 역사탐방길, 전통문화 이야기길

다.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경영지원

7. 사업효과

- 농촌지역 생태·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아름다운 농촌경관 보전 유지
- 지역주민 참여로 공동체 활성화와 운영주체로 삶의 만족도 향상

8.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9. 위탁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10. 기타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계(☎063-454-589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1-54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고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 4. 14.

군 산 시 장



1. 고시 내용

시 설 명	주 소	지정 구간	비 고
도담유치원	군산시 산북동 3624	유치원 앞 인접도로 L=250m	확대

2.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063-454-3813)

3. 위치도 및 구간 : 붙임참조

【 붙임 1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위치

■ 시설명 : 도담유치원 / 군산시 산북동 3624 / 인접도로 250m



군산시 공고 제2021-75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87 외1)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나운동 156-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2-187 외1)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1년 4월 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건설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나운동 156-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주차장)사업
 - 2) 명 칭 : 서해초교 사거리 개선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도로(중로 2-187호선) : B=17m, L=30m
 - 2) 주차장 122호 : A=1,273.5m²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청(건설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6.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32) 및 건설과(☎063-454-3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중로 2-187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나운동	156-1	잡	1,799.9	526.4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1필지			1,799.9	526.4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주차장 122호)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나운동	156-1	잡	1,799.9	1,273.5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계	1필지			1,799.9	1,273.5						

군산시 공고 제2021-768호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

「성산 도암~내흥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선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군 산 시 장



□ 성산 도암~내흥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 지	개발계획		지정 (폐지/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성산면	리도	둔덕선	리도 201	내흥동 31-1	성산면 둔덕리 10-5	4.5 (포장 3.1, 미포장1.4)		8.0	6.5	도 로 확포장

1. 사 업 명 : 성산 도암~내흥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2.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4km, B=8.0m
 3.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
 5.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1. 4. 7.~2021. 4. 21.)
 6. 열람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063-454-3592)로 문의바랍니다.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성산도암~내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동/리	지번(당초)	지번(분할)	지목	공부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군산	내흥동	31-1		도	66	3	유종희 외 17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69 시지정맨션 201동 801호 외 17건				
2		내흥동	28-4		도	2,062	157	농업진흥공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포일리487				
3		내흥동	28-2	28-5	대	821	429	군산시					
4		내흥동	28-3		도	86	75	오돈기	내흥동 57				
5		내흥동	29	29-2	전	1,183	8	군산시					
6		내흥동	28-1		도	83	38	오석두	둔덕리 435				
7		성산면 둔덕리	468-5		도	1,715	37	농업진흥공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포일리487				
8		성산면 둔덕리	468-7		도	34	30	미등기		농업진흥공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포일리 487	토지대장 소유자	
9		성산면 둔덕리	468-6	468-8	임	1,555	27	황병섭	둔덕리 468				
10		성산면 둔덕리	468-2		도	45	42	미등기		이근풍	서삼면 와룡리	토지대장 소유자	
11		성산면 둔덕리	464-2		도	20	6	오제순	둔덕리 464-1				
12		성산면 둔덕리	463-2		도	149	141	이도준	기정면 구암리 374				
13		성산면 둔덕리	463-3	463-3	대	255	255	오영신	옥산면 방죽안길 46	전북은행 김제신용 협동조합	전주시덕진구 백제대로 566 김제시 요촌동 117-7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 가압류	
14		성산면 둔덕리	526		도	13,153	1,989	국(농수산부)					
15		성산면 둔덕리	462-8	462-18	전	1,061	104	군산시					
16		성산면 둔덕리	495-2		도	30	27	양주영	둔덕리 507				
17		성산면 둔덕리	462-3	462-14	전	383	176	군산시					
18		성산면 둔덕리	462-2	462-13	대	539	449	군산시					
19		성산면 둔덕리	495-1		대	883	47	김은희	김제시 진봉면 가실리 6-10				
20		성산면 둔덕리	496-2		도	23	18	양주영	둔덕리 507				
21		성산면 둔덕리	495-4		도	23	23	양주영	둔덕리 507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동/리	지번(당초)	지번(분할)	지목	공부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성산면 둔덕리	496-1	496-3	전	1,101	113	채순자	풍문2길 30, 101동 702호				
23		성산면 둔덕리	462-1		도	248	226	미등기		오수남	북일면 둔덕리	토지대장 소유자	
24		성산면 둔덕리	462-4	462-15	대	255	71	군산시					
25		성산면 둔덕리	497-4	497-5	답	5,051	473	군산시					
26		성산면 둔덕리	462-5		전	410	65	오대식	둔덕리 462-4				
27		성산면 둔덕리	462-16		대	79	79	군산시					
28		성산면 둔덕리	497-2		도	76	69	미등기		이동섭	둔덕리 502	토지대장 소유자	
29		성산면 둔덕리	462-6	462-17	전	350	105	군산시					
30		성산면 둔덕리	379-1		도	33	33	군산시					
31		성산면 둔덕리	497-3		도	76	74	미등기		이동섭	둔덕리 502	토지대장 소유자	
32		성산면 둔덕리	379-3	379-7	답	8,628	917	군산시					
33		성산면 둔덕리	379-2		도	102	102	군산시					
34		성산면 둔덕리	378-2		도	208	188	김홍두	군산부 구복동 46				
35		성산면 둔덕리	378-1	378-3	답	4,810	888	군산시					
36		성산면 둔덕리	376-1	376-4	전	1,339	392	군산시					
37		성산면 둔덕리	376-2		도	99	76	오길식	지곡동 259 동신 아파트 102동 1507호				
38		성산면 둔덕리	375-2		도	3	3	오석두	둔덕리 435				
39		성산면 둔덕리	375-1		전	76	76	군산시					
40		성산면 둔덕리	375-3		전	33	32	오석두	둔덕리 435				
41		성산면 둔덕리	385-1		도	50	18	오석두	둔덕리 435				
42		성산면 둔덕리	408-18	408-22	전	2,073	16	군산시					
43		성산면 둔덕리	391-1	391-4	창고	981	125	군산시					
44		성산면 둔덕리	391-2		도	46	46	미등기		한순구	둔덕리 437	토지대장 소유자	
45		성산면 둔덕리	390-2		도	36	36	박확숙	둔덕리 389				
46		성산면 둔덕리	390-1	390-6	잡	298	105	군산시					
47		성산면 둔덕리	385-12		도	3	3	군산시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동/리	지번(당초)	지번(분할)	지목	공부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8		성산면 둔덕리	387-14		도	20	20	박상규	둔덕리 389				
49		성산면 둔덕리	385-13		도	36	41	군산시					
50		성산면 둔덕리	390-3	390-7	전	208	38	군산시					
51		성산면 둔덕리	390-5	390-8	전	33	10	군산시					
52		성산면 둔덕리	387-5	387-21	전	1,451	243	군산시					
53		성산면 둔덕리	389	389-1	대	913	5	군산시					
54		성산면 둔덕리	387-2		도	122	122	김흥두	군산시 구복동 46				
55		성산면 둔덕리	388-2		도	152	152	노정숙	창오리 424				
56		성산면 둔덕리	388-3		전	499	499	군산시					
57		성산면 둔덕리	387-11	387-23	답	1,970	33	군산시					
58		성산면 둔덕리	395-2		도	56	56	노정숙	창오리 424				
59		성산면 둔덕리	395-1		대	13	13	군산시					
60		성산면 둔덕리	387-17		수도	1,317	412	국(환 경부)					
61		성산면 둔덕리	387-16		수도	57	57	국(환 경부)					
62		성산면 둔덕리	387-8	387-22	답	2,065	321	군산시					
63		성산면 둔덕리	422-3		구	86	7	국(농수 산부)					
64		성산면 둔덕리	422-7		답	75	11	군산시					
65		성산면 둔덕리	387-1		도	29	29	김흥두	군산시 구복동 46				
66		성산면 둔덕리	420-4		답	148	105	군산시					
67		성산면 둔덕리	420-1		도	33	33	김흥두	군산시 구복동 46				
68		성산면 둔덕리	418-2		도	294	294	국(기획 재정부)					
69		성산면 둔덕리	420-3	420-6	답	6,038	1,494	군산시					
70		성산면 둔덕리	418-1	418-4	답	5,028	463	군산시					
71		성산면 둔덕리	420-2		도	50	50	김흥두	군산시 구복동 46				
72		성산면 둔덕리	419-2		도	69	69	채규설	둔덕리 59				
73		성산면 둔덕리	419-1	419-4	전	1,534	18	군산시					

연번	소 재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동/ 리	지번 (당초)	지번 (분할)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4		성산면 둔덕리	25	25-2	답	307	215	군산시					
75		성산면 둔덕리	27-1		전	77	68	조중신 외 2명	둔덕리 26-2				
76		성산면 둔덕리	27-3	27-4	전	260	2	군산시					
77		성산면 둔덕리	25-1		답	53	53	군산시					
78		성산면 둔덕리	27-2		도	83	83	군산시					
79		성산면 둔덕리	420-5		답	154	79	군산시					
80		성산면 둔덕리	24-6		답	29	29	군산시					
81		성산면 둔덕리	29-2		도	30	30	조중신 외 2명	둔덕리 26-2				
82		성산면 둔덕리	24-1	24-10	답	2,123	1,308	군산시					
83		성산면 둔덕리		24-11	답		81	군산시					
84		성산면 둔덕리	30-2		도	258	68	군산시					
85		성산면 둔덕리	30-1	30-3	전	1,127	28	군산시					
86		성산면 둔덕리	산153	산153-1	임	3,868	238	오인섭	둔덕리 433				
87		성산면 둔덕리	24-4	24-13	답	1,646	18	군산시					
88		성산면 둔덕리	산152	산152-1	임	4,760	1,754	군산시					
89		성산면 둔덕리	31-3	31-4	답	6,291	1,658	군산시					
90		성산면 둔덕리	산151- 1	산151-4	임	7,835	1,365	군산시					
91		성산면 둔덕리	31-2		도	50	50	군산시					
92		성산면 둔덕리	31-1		유	20	16	강세병	둔덕리 106				
93		성산면 둔덕리	40-2		도	218	218	군산시					
94		성산면 둔덕리	40-1	40-6	답	3,167	202	군산시					
95		성산면 둔덕리	40-4	40-7	답	1,842	480	군산시					
96		성산면 둔덕리	40-5		답	82	42	군산시					
97		성산면 둔덕리	40-3		구	89	44	국(농 수산부)					
98		성산면 둔덕리	41-4		구	109	46	국(농 수산부)					
99		성산면 둔덕리	41-2		도	248	246	군산시					
100		성산면 둔덕리	41-5	41-7	답	1,587	257	조판옥	둔덕리 103				

연번	소 재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동/리	지번 (당초)	지번 (분할)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1		성산면 둔덕리	41-3	41-6	답	1,855	453	군산시					
102		성산면 둔덕리	42-3	42-5	답	1,220	247	군산시					
103		성산면 둔덕리	42-2		도	136	136	채수강 외2인	마동2길 31				
104		성산면 둔덕리	42-1	42-6	답	4,119	239	군산시					
105		성산면 둔덕리	43-3	43-8	답	893	130	군산시					
106		성산면 둔덕리	43-2		도	122	122	국(농 수산부)					
107		성산면 둔덕리	43-5		구	264	110	국(농 수산부)					
108		성산면 둔덕리	43-4		구	347	107	군산시					
109	군산	성산면 둔덕리	525		구	18,504	302	국(농 수산부)					
110		성산면 둔덕리	44-6		구	506	195	군산시					
111		성산면 둔덕리	44-7		구	545	130	군산시					
112		성산면 둔덕리	44-5	44-18	답	4,743	119	군산시					
113		성산면 둔덕리		44-19			24	군산시					
114		성산면 둔덕리	44-3	44-16	답	1,831	107	군산시					
115		성산면 둔덕리	44-2		도	119	119	전철수	회현면 월우리 395				
116		성산면 둔덕리	14-4	14-10	답	3,275	1,349	군산시					
117		성산면 둔덕리	14-2		도	282	282	전중철 수	군산시 경포동 572				
118		성산면 둔덕리	45-1		전	101	1	전यी 씨시흥 공파필 식공파 종중회	개정면 운회리 434				
119		성산면 둔덕리	14-1	14-12	답	697	20	군산시					
120		성산면 둔덕리		14-11			184	군산시					
121		성산면 둔덕리	13-2		도	3,704	900	전라 북도					
122		성산면 둔덕리	13-4		답	23	23	전यी 씨시흥 공파필 식공파 종중회	개정면 운회리 434				
123		성산면 둔덕리	12-4	12-16	답	808	163	군산시					
124		성산면 둔덕리	10-5		도	1,425	611	전라 북도					

군산시 공고 제2021-780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성산 도암~내홍동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공고문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산 도암~내홍동간 도로확포장공사
- 위 치 : 군산시 내홍동 31-1 ~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10-5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4km, B=8.0m
-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2. 열람공고 기간 : 2021. 4. 12. ~ 2021. 4. 26.(15일간)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 지 :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463-3번지 외 45필지
 - 지장물 :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463-3번지 외 1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군산시청 건설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1. 4. 12. ~ 2020. 4. 26
- 열람 장소 : 군산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 (☎ 063-454-3952)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군산시청 건설과에 서면으로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를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및 보상시기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진행 예정임
-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장(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추후 지적측량 등 행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토지(물건) 조서 1부.

의 견 서

1.제 목	성산 도암~내흥동간 도로확포장공사				
2.당사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padding: 5px;">성명(명칭)</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주 소</td> <td style="padding: 5px;"></td> </tr> </table>	성명(명칭)		주 소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1.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군 산 시 장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성산도암~내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동/리	지번(당초)	지번(분할)	지목	공부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군산	내흥동	31-1		도	66	3	유종희 외 17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69 시지창맨션 201동 801호 외 17건				
2		내흥동	28-4		도	2,062	157	농업진흥공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포일리487				
3		내흥동	28-2	28-5	대	821	429	군산시					
4		내흥동	28-3		도	86	75	오돈기	내흥동 57				
5		내흥동	29	29-2	전	1,183	8	군산시					
6		내흥동	28-1		도	83	38	오석두	둔덕리 435				
7		성산면 둔덕리	468-5		도	1,715	37	농업진흥공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포일리487				
8		성산면 둔덕리	468-7		도	34	30	미등기		농업진흥공사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포일리487	토지대장 소유자	
9		성산면 둔덕리	468-6	468-8	임	1,555	27	황병섭	둔덕리 468				
10		성산면 둔덕리	468-2		도	45	42	미등기		이근풍	서삼면 와룡리	토지대장 소유자	
11		성산면 둔덕리	464-2		도	20	6	오제순	둔덕리 464-1				
12		성산면 둔덕리	463-2		도	149	141	이도준	기정면 구암리 374				
13		성산면 둔덕리	463-3	463-3	대	255	255	오영신	옥산면 방죽안길 46	전북은행 김제신용 협동조합	전주시덕진구 백제대로 566 김제시 요촌동 117-7	가압류 경매개시 가압류	
14		성산면 둔덕리	526		도	13,153	1,989	국(농수산부)					
15		성산면 둔덕리	462-8	462-18	전	1,061	104	군산시					
16		성산면 둔덕리	495-2		도	30	27	양주영	둔덕리 507				
17		성산면 둔덕리	462-3	462-14	전	383	176	군산시					
18		성산면 둔덕리	462-2	462-13	대	539	449	군산시					
19		성산면 둔덕리	495-1		대	883	47	김은희	김제시 진봉면 가실리 6-10				
20		성산면 둔덕리	496-2		도	23	18	양주영	둔덕리 507				
21		성산면 둔덕리	495-4		도	23	23	양주영	둔덕리 507				
22		성산면 둔덕리	496-1	496-3	전	1,101	113	채순자	풍문2길 30, 101동 702호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동/리	지번(당초)	지번(분할)	지목	공부상면적(m)	편입면적(m)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3		성산면 둔덕리	462-1		도	248	226	미등기		오수남	북일면 둔덕리	토지대장 소유자	
24		성산면 둔덕리	462-4	462-15	대	255	71	군산시					
25		성산면 둔덕리	497-4	497-5	답	5,051	473	군산시					
26		성산면 둔덕리	462-5		전	410	65	오대식	둔덕리 462-4				
27		성산면 둔덕리	462-16		대	79	79	군산시					
28		성산면 둔덕리	497-2		도	76	69	미등기		이동섭	둔덕리 502	토지대장 소유자	
29		성산면 둔덕리	462-6	462-17	전	350	105	군산시					
30		성산면 둔덕리	379-1		도	33	33	군산시					
31		성산면 둔덕리	497-3		도	76	74	미등기		이동섭	둔덕리 502	토지대장 소유자	
32		성산면 둔덕리	379-3	379-7	답	8,628	917	군산시					
33		성산면 둔덕리	379-2		도	102	102	군산시					
34		성산면 둔덕리	378-2		도	208	188	김홍두	군산부 구복동 46				
35		성산면 둔덕리	378-1	378-3	답	4,810	888	군산시					
36		성산면 둔덕리	376-1	376-4	전	1,339	392	군산시					
37		성산면 둔덕리	376-2		도	99	76	오길식	지곡동 259 동신아파트 102동 1507호				
38		성산면 둔덕리	375-2		도	3	3	오석두	둔덕리 435				
39		성산면 둔덕리	375-1		전	76	76	군산시					
40		성산면 둔덕리	375-3		전	33	32	오석두	둔덕리 435				
41		성산면 둔덕리	385-1		도	50	18	오석두	둔덕리 435				
42		성산면 둔덕리	408-18	408-22	전	2,073	16	군산시					
43		성산면 둔덕리	391-1	391-4	창고	981	125	군산시					
44		성산면 둔덕리	391-2		도	46	46	미등기		한순구	둔덕리 437	토지대장 소유자	
45		성산면 둔덕리	390-2		도	36	36	박화숙	둔덕리 389				
46		성산면 둔덕리	390-1	390-6	잡	298	105	군산시					
47		성산면 둔덕리	385-12		도	3	3	군산시					
48		성산면 둔덕리	387-14		도	20	20	박상규	둔덕리 389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동/리	지번(당초)	지번(분할)	지목	공부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9		성산면 둔덕리	385-13		도	36	41	군산시					
50		성산면 둔덕리	390-3	390-7	전	208	38	군산시					
51		성산면 둔덕리	390-5	390-8	전	33	10	군산시					
52		성산면 둔덕리	387-5	387-21	전	1,451	243	군산시					
53		성산면 둔덕리	389	389-1	대	913	5	군산시					
54		성산면 둔덕리	387-2		도	122	122	김흥두	군산시 구복동 46				
55		성산면 둔덕리	388-2		도	152	152	노정숙	창오리 424				
56		성산면 둔덕리	388-3		전	499	499	군산시					
57		성산면 둔덕리	387-11	387-23	답	1,970	33	군산시					
58		성산면 둔덕리	395-2		도	56	56	노정숙	창오리 424				
59		성산면 둔덕리	395-1		대	13	13	군산시					
60		성산면 둔덕리	387-17		수도	1,317	412	국(환경부)					
61		성산면 둔덕리	387-16		수도	57	57	국(환경부)					
62		성산면 둔덕리	387-8	387-22	답	2,065	321	군산시					
63		성산면 둔덕리	422-3		구	86	7	국(농수산부)					
64		성산면 둔덕리	422-7		답	75	11	군산시					
65		성산면 둔덕리	387-1		도	29	29	김흥두	군산시 구복동 46				
66		성산면 둔덕리	420-4		답	148	105	군산시					
67		성산면 둔덕리	420-1		도	33	33	김흥두	군산시 구복동 46				
68		성산면 둔덕리	418-2		도	294	294	국(기획재정부)					
69		성산면 둔덕리	420-3	420-6	답	6,038	1,494	군산시					
70		성산면 둔덕리	418-1	418-4	답	5,028	463	군산시					
71		성산면 둔덕리	420-2		도	50	50	김흥두	군산시 구복동 46				
72		성산면 둔덕리	419-2		도	69	69	채규철	둔덕리 59				
73		성산면 둔덕리	419-1	419-4	전	1,534	18	군산시					
74		성산면 둔덕리	25	25-2	답	307	215	군산시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동/리	지번(당초)	지번(분할)	지목	공부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5		성산면 둔덕리	27-1		전	77	68	조중신 외 2명	둔덕리 26-2				
76		성산면 둔덕리	27-3	27-4	전	260	2	군산시					
77		성산면 둔덕리	25-1		답	53	53	군산시					
78		성산면 둔덕리	27-2		도	83	83	군산시					
79		성산면 둔덕리	420-5		답	154	79	군산시					
80		성산면 둔덕리	24-6		답	29	29	군산시					
81		성산면 둔덕리	29-2		도	30	30	조중신 외 2명	둔덕리 26-2				
82		성산면 둔덕리	24-1	24-10	답	2,123	1,308	군산시					
83		성산면 둔덕리		24-11	답		81	군산시					
84		성산면 둔덕리	30-2		도	258	68	군산시					
85		성산면 둔덕리	30-1	30-3	전	1,127	28	군산시					
86		성산면 둔덕리	산153	산153-1	임	3,868	238	오인섭	둔덕리 433				
87		성산면 둔덕리	24-4	24-13	답	1,646	18	군산시					
88		성산면 둔덕리	산152	산152-1	임	4,760	1,754	군산시					
89		성산면 둔덕리	31-3	31-4	답	6,291	1,658	군산시					
90		성산면 둔덕리	산151-1	산151-4	임	7,835	1,365	군산시					
91		성산면 둔덕리	31-2		도	50	50	군산시					
92		성산면 둔덕리	31-1		유	20	16	강세병	둔덕리 106				
93		성산면 둔덕리	40-2		도	218	218	군산시					
94		성산면 둔덕리	40-1	40-6	답	3,167	202	군산시					
95		성산면 둔덕리	40-4	40-7	답	1,842	480	군산시					
96		성산면 둔덕리	40-5		답	82	42	군산시					
97		성산면 둔덕리	40-3		구	89	44	국(농수산부)					
98		성산면 둔덕리	41-4		구	109	46	국(농수산부)					
99		성산면 둔덕리	41-2		도	248	246	군산시					
100		성산면 둔덕리	41-5	41-7	답	1,587	257	조판옥	둔덕리 103				

연번	소재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동/리	지번(당초)	지번(분할)	지목	공부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1		성산면 둔덕리	41-3	41-6	답	1,855	453	군산시					
102		성산면 둔덕리	42-3	42-5	답	1,220	247	군산시					
103		성산면 둔덕리	42-2		도	136	136	채수강 외2인	마동2길 31				
104		성산면 둔덕리	42-1	42-6	답	4,119	239	군산시					
105		성산면 둔덕리	43-3	43-8	답	893	130	군산시					
106		성산면 둔덕리	43-2		도	122	122	국(농수산부)					
107		성산면 둔덕리	43-5		구	264	110	국(농수산부)					
108		성산면 둔덕리	43-4		구	347	107	군산시					
109	군산	성산면 둔덕리	525		구	18,504	302	국(농수산부)					
110		성산면 둔덕리	44-6		구	506	195	군산시					
111		성산면 둔덕리	44-7		구	545	130	군산시					
112		성산면 둔덕리	44-5	44-18	답	4,743	119	군산시					
113		성산면 둔덕리		44-19			24	군산시					
114		성산면 둔덕리	44-3	44-16	답	1,831	107	군산시					
115		성산면 둔덕리	44-2		도	119	119	전철수	회현면 원우리 395				
116		성산면 둔덕리	14-4	14-10	답	3,275	1,349	군산시					
117		성산면 둔덕리	14-2		도	282	282	전중철수	군산시 경포동 572				
118		성산면 둔덕리	45-1		전	101	1	전익이씨 시흥공파 필식공파 종중회	개정면 운회리 434				
119		성산면 둔덕리	14-1	14-12	답	697	20	군산시					
120		성산면 둔덕리		14-11			184	군산시					
121		성산면 둔덕리	13-2		도	3,704	900	전라북도					
122		성산면 둔덕리	13-4		답	23	23	전익이씨 시흥공파 필식공파 종중회	개정면 운회리 434				
123		성산면 둔덕리	12-4	12-16	답	808	163	군산시					
124		성산면 둔덕리	10-5		도	1,425	611	전라북도					

군산시 공고 제2021-793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대야면 삼라교 재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공고문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12.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대야면 삼라교 재가설공사
- 위치 : 대야면 접산리 970 ~ 접산리 1110
- 사업량 : 도로확포장 L=678m, B=8.0m
-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2. 열람공고 기간 : 2021. 4. 12. ~ 2021. 4. 26.(15일간)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토지 :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012-1번지 외 5필지
- ※ 세부내역은 군산시청 건설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4.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1. 4. 12. ~ 2020. 4. 26
- 열람 장소 : 군산시청 안전건설국 건설과 (☎ 063-454-3952)
-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기간 내 군산시청 건설과에 서면으로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이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절차, 보상방법 및 보상시기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진행 예정임
- 보상방법 :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장(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추후 지적측량 등 행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의 견 서

1.제 목		대야면 삼라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군 산 시 장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 지 조 서

□ 대야면 삼라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 내용	
1	군산	대야	접산	970		도	64.0	64.0	국(건설 교통부)					
2				964		구	106.0	106.0	국(농수 산부)					
3				1111		구	36.0	36.0	국(농림 부)					
4				1012-1		답	549.4	549.4	이효순 외 5인	전북 익산시 무왕로19길 65, 203동 402호				
5				508-27		답	88.0	88.0	추영자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268-1				
6				508-33		답	238.0	238.0	추영자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268-1				
7				803-6		전	224.0	224.0	군산시					
8				803-5		도	89.0	89.0	군산시					
9				802-1		전	83.0	83.0	군산시					
10				508-28		답	752.0	752.0	군산시					
11				508-29		답	114.0	114.0	군산시					
12				508-34		답	224.0	224.0	군산시					
13				508-24		답	186.0	186.0	군산시					
14				988		도	30.0	30.0	국(농수 산부)					
15				508-30		답	857.0	857.0	군산시					
16				518-27		도	10.0	10.0	군산시					
17				989		도	13.0	13.0	국(농수 산부)					
18				508-32		답	500.0	500.0	군산시					
19				508-35		답	548.0	548.0	군산시					
20				1134		도	885.0	885.0	국(농림 부)					
21				511-27		답	48.0	48.0	군산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 내용	
22				1021-7		답	545.0	545.0	군산시					
23				1135		구	18.0	18.0	국(농림 부)					
24				1136		도	34.0	34.0	국(농림 부)					
25				1023-10		답	62.0	62.0	군산시					
26				1109		구	204.0	204.0	국(농림 부)					
27				1011-5		답	1,479.6	1,479.6	조호빈	군산시 하신3길 7, 106동 904호				
28				1107		구	43.0	43.0	국(농림 부)					
29				1132		도	319.0	319.0	국(농림 부)					
30				1009-15		답	1,777.8	1,777.8	조호빈	군산시 하신3길 7, 106동 904호				
31				1009-14		답	1,471.5	1,471.5	조호빈	군산시 하신3길 7, 106동 904호				
32				1106		도	106.0	106.0	국(농림 부)					
33				1011-4		답	636.0	636.0	군산시					
34				803-2		전	188.0	188.0	군산시					
35				803-3		도	136.0	136.0	군산시					
36				1110		도	457.0	457.0	국(농림 부)					

군산시 공고 제2021-794호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대야면 삼라교 재가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 1. ~ 2022. 12.

사업의 종류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농어촌 도로 사업 (접산선 농로 314)	대야면 접산리 970 ~ 접산리 1110	○ 연장 : 678m ○ 폭원 : 8.0m	군산시장 (군산시 시청로 17)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대야면 삼라교 재가설공사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시설계	'21. 4. 1. ~ '21. 4. 15. (15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1. 4. 12. ~ '21. 4. 26.(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시설계(☎063-454-3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

□ 대야면 삼라교 재가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 내용	
1	군산	대야	접산	970		도	64.0	64.0	국(건설 교통부)					
2				964		구	106.0	106.0	국(농수 산부)					
3				1111		구	36.0	36.0	국(농림 부)					
4				1012-1		답	549.4	549.4	이효순 외 5인	전북 익산시 무왕로19길 65, 203동 402호				
5				508-27		답	88.0	88.0	추영자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268-1				
6				508-33		답	238.0	238.0	추영자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268-1				
7				803-6		전	224.0	224.0	군산시					
8				803-5		도	89.0	89.0	군산시					
9				802-1		전	83.0	83.0	군산시					
10				508-28		답	752.0	752.0	군산시					
11				508-29		답	114.0	114.0	군산시					
12				508-34		답	224.0	224.0	군산시					
13				508-24		답	186.0	186.0	군산시					
14				988		도	30.0	30.0	국(농수 산부)					
15				508-30		답	857.0	857.0	군산시					
16				518-27		도	10.0	10.0	군산시					
17				989		도	13.0	13.0	국(농수 산부)					
18				508-32		답	500.0	500.0	군산시					
19				508-35		답	548.0	548.0	군산시					
20				1134		도	885.0	885.0	국(농림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	면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리 내용	
21				511-27		답	48.0	48.0	군산시					
22				1021-7		답	545.0	545.0	군산시					
23				1135		구	18.0	18.0	국(농림 부)					
24				1136		도	34.0	34.0	국(농림 부)					
25				1023-10		답	62.0	62.0	군산시					
26				1109		구	204.0	204.0	국(농림 부)					
27				1011-5		답	1,479.6	1,479.6	조호빈	군산시 하신3길 7, 106동 904호				
28				1107		구	43.0	43.0	국(농림 부)					
29				1132		도	319.0	319.0	국(농림 부)					
30				1009-15		답	1,777.8	1,777.8	조호빈	군산시 하신3길 7, 106동 904호				
31				1009-14		답	1,471.5	1,471.5	조호빈	군산시 하신3길 7, 106동 904호				
32				1106		도	106.0	106.0	국(농림 부)					
33				1011-4		답	636.0	636.0	군산시					
34				803-2		전	188.0	188.0	군산시					
35				803-3		도	136.0	136.0	군산시					
36				1110		도	457.0	457.0	국(농림 부)					

군산시 공고 제2021-825호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연 번	안 건 명
1	군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농공단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0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21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
22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3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
24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5	군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2021년 4월 14일

군 산 시 장

